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 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2.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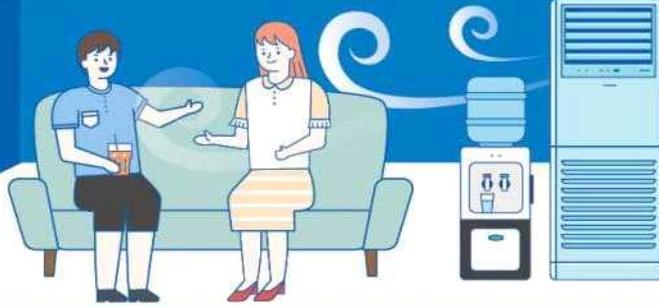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권구형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책임자	부 장	유재흥 (052-703-0646)
		담당자	차 장	장공화 (052-703-0647)



- **(홍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OPS) 제작·배포, 라디오, 전광판 등 매체·플랫폼 홍보, 지자체, 직능단체 등 활용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지역별 캠페인 전개
 - * **(네트워크 활용)** 243개 지자체(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지역단위 직능단체 및 협회), 13개 직능단체 및 업종별협회(소속 회원사), 1,378개 안전보건전문기관(안전보건대행 사업장) 등
 - * **(플랫폼 활용)** 중대재해 사이렌(3.5만명), 한고원 고용허가제 시스템(5만여명), 안전공단 카카오톡 구독자(3.5만명),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등 SNS(6천명) 등
- **(특별지도기간 운영)** 12월 말까지 특별지도기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제재(과태료 부과)보다 시정 중심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휴게시설 설치 유도
 - * 50인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22.8.18)에도 특별지도기간 운영(~'22.10.31)
 - 중점 지도 대상 :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 현장 등 취약분야(4,000여개소)
- **(컨설팅)**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청소·경비 등 7대 취약직종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공(2,500개소)
- **(재정지원)**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재정 지원('23년 223억원)
 - * 1,145개소(개별 950, 공동 195), 214억원 지원('23.6월 기준)
- **(제도 운영 합리화)** 그간 제도 도입·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합리화 노력 지속 전개
 - *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경기도, 부산, 광명, 경북교육청 등), 조례로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을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적용 확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022.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1 전화 상담원
-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 
3 텔레마케터
- 
4 배달원
-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6 아파트 경비원
- 
7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2022. 9. 5.)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①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③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3 온도 적절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4 습도 적절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5 조명 적절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주요 질의답변

Q1. 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 ▶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